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1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민형배 · 조인철 · 김우영
박지원 · 조계원 · 최혁진
윤종오 · 이성윤 · 안도걸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

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2.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
- ③ 제2항제2호의 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 본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110조 및 제115조를”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1.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2.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제2호의 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 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 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 위”로 본다.
--	--